

부산지방법원 2021. 1. 12 선고 2020가단13614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광필

변론 종결 2020. 12. 8

판결 선고 2021. 1. 12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원고는 2018. 5. 14. C 소유의 부산 연제구 D건물 2층 E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 라한다)에

대하여 보증금 5,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·사용해 오던 중 피고가 신청한 부산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절차 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,그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 이 배당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살피건대,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채권이 없음에도 배당 을 받는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게 부족하므로,원고의 위 주장 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(원고는 2020.11. 10.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, 피고는 원고 의위 소 취하에 부동의 하였다).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김미진